

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

제4조제5항 중 “서면 등”을 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 범위)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(이하 “손해보장사업”이라 한다)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.

1. 지능형 로봇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
2. 지능형 로봇의 수리, 교체,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
3.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4. 그 밖에 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해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

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 및 제3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생명·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로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.

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4조의2, 제24조의3 및 제3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안전인증의 표시 등)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.

②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사업장에 걸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 및 광고할 수 있다.

제24조의3(책임보험 등 가입)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(이하 “실외이동로봇 운영자”라 한다)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(이하 “책임보험등”이라 한다)로 한다.

② 실외이동로봇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을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하며,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날까지 갱신하여야 한다.

③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지급보험(공제)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. 다만,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
2.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
3.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(이하

이 조에서 “후유장애”라 한다)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

4.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

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보험(공제)금액을 지급한다.

1.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

2.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

3.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
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자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1조의2(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)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③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.

제34조 중 “별표”를 “별표 2”로 한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정책심의회회의 구성) ① ~ ④ (생 략)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문 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<u>서면 등으로</u>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4조(정책심의회회의 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<u>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</u> ----- -----. <u>제11조의2(지능형 로봇 손해보장</u> <u>사업의 담보 범위) ① 법 제19</u> <u>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</u> <u>손해보장사업(이하 “손해보장</u> <u>사업”이라 한다)의 담보 범위는</u>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</u> <u>일부로 한다.</u> <u>1. 지능형 로봇의 납품계약과</u> <u>관련한 이행책임</u> <u>2. 지능형 로봇의 수리, 교체, 회</u> <u>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</u> <u>3.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제3</u> <u>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</u> <u>배상책임</u> <u>4. 그 밖에 지능형 로봇으로 인</u> <u>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</u> <u>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9조의</u>

제12조(투자대상사업) 법 제21조
에서 “지능형 로봇 제품, 부품
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
보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와 관련
된 사업을 말한다.

1. 지능형 로봇 제품·부품의
기획, 연구개발, 생산, 유통, 판
매 및 사후관리
2. 시스템통합기술·요소기술
(要素技術)·소프트웨어기술
·콘텐츠제작기술·정보통신
융합기술 등 지능형 로봇 제

2제1항에 따라 손해보장사업
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
임

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
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는 지능
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 및
제3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생명
·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로 한
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
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
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.

<삭 제>

품·부품과 관련된 기술의 기획,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의 취득·매각

3.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활용한 서비스의 기획, 연구개발,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

제13조(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)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21조,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21조,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지능형 로봇투자회사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게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영업보고서의 제출) ① 법 제24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

<삭 제>

<삭 제>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협회”는 “산업통상자원부”로 본다.

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제15조(자산운용회사의 업무위탁 등)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기술적·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운영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 자문을 하거나 위탁할

<삭 제>

수 있다.

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로봇공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로봇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계·전기·전자·정보통신 직무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로봇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3.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로봇 관련 기관에서 로봇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서 로봇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운용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5.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로봇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.

제16조(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)

<삭 제>

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공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
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

물」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
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지능형 로
봇투자회사는 법 제27조제1항
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(이하
“투자위험보증기관”이라 한다)
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
하고 금전을 주고받는 계약을
체결해야 한다.

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법 제27
조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
사업(이하 “투자위험보증사업”
이라 한다)을 위하여 투자위험
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다음 각
호의 기준에 따라 운용해야 한
다.

1. 투자위험보증기관의 다른 회
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
2. 투자위험보증 수수료, 이자
및 그 밖에 자금 운용으로 생
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
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
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
로 할 것
3. 투자위험보증 지급금, 투자위
험보증기관의 운영 경비, 그
밖에 자금 운용에 필요한 경

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그 지출로 할 것

4.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할 것

5.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(補填)할 것

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
1. 금융기관에 예치

2. 국공채의 매입

제17조(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방법서 등) ①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보증방법, 보증기간 및 보증자금 운용배수 등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

<삭 제>

에 관한 연간 계획을 작성하여
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
해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
에도 또한 같다.

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매 회계
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투
자위험보증제정에 관한 결산서,
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
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
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
험보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투자
회사에 대하여 투자위험보증사
업과 관련된 사업보고서의 제출
을 요구할 수 있고, 투자위험보
증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
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법 제
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치를
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8조(자산운용의 방법) ① 법
제28조제1항제1호에서 “지능형
로봇개발에 대한 투자 등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제1
2조 각 호의 투자대상사업 중
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말한
다.

<삭 제>

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기업”이란 지능형 로봇사업 매출액 비중, 지능형 로봇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.

제19조(자금차입 등의 비율) 법 제29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삭 제>

제24조의2(안전인증의 표시 등)

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.

②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사업장에 걸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 및 광고할 수 있다.

제24조의3(책임보험 등 가입) ①

법 제40조의4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

는 자(이하 “실외이동로봇 운영자”라 한다)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(이하 “책임보험등”이라 한다)로 한다.

② 실외이동로봇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을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하며,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날까지 갱신하여야 한다.

③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지급보험(공제)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. 다만,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

2.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

3.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(이하 이 조에서 “후유장애”라 한다)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

4.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

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보험(공제)금액을 지급한다.

1.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

2.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

3.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

<신 설>

제3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 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
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자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1조의2(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)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③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.

제3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----

----- 별표 2-----.

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취소 등 기준(제31조의2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내용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 시	2차 위반 시	3차 위반 시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42조의3제1항제1호	지정 취소	-	-
나.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 하게 된 경우	법 제42조의3제1항제2호	개선 권고	개선 권고	지정 취소
다. 부도, 폐업,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	법 제42조의3제1항제3호	지정 취소	-	-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에게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였거나,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- 4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벌금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6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7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49조제1항제2호	100	150	200
나.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 피한 경우	법 제49조제1항제3호	100	150	200
다. 법 제40조제1항의 요청에 응하 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제1항제4호	50	100	150